

# 중국, 전기전자제품 폐기처리 지침 규제 요약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중국 생태환경부(MEP)\*는 환경보호를 위해 9대 전기전자제품의 폐전기전자(WEEE)\*\* 처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

\* MEP: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레인지 후드 등 9종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를 위한 환경관리 및 오염방지 및 관리지침

- (적용대상) 주방후드,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모니터, 이동통신장비, 전화기
- (시행일) '2021.09.08.

## □ 주요 내용

- 제·개정 주요 내용

- (폐전기전자 처리 지침) 전기전자 폐기물의 분해, 처리작업 지도 및 규범화 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

### <주요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처리기업의 기본 요구사항)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기업은 보관/처리장소, 설비, 인원 등 기본 요구사항을 갖춰야 함</li> <li>② (오염물 배출) 오수 및 소음 배출은 중국 표준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li> <li>③ (대비 매뉴얼 작성)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 기업은 돌발적인 환경사건의 응급대비책을 작성해야 함</li> <li>④ (데이터 정보관리 및 경영활동 보고) 처리 기업은 데이터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경영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함</li> </ul> |
|---|

- 인증정보

- (인증개요) 중국은 '12년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인증기관) 중국 해관총서
- (인증절차) 중국 내 제조업체는 국가세무총국에 분기별로 기금을 납부하고, 수입업체는 화물 수입신고 시 해관총서에 수수료를 납부함
  - ① 신청서 제출 ②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제품 평가 실시 ③ 기금 납부

2021-580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대응사업

『중국, 전기전자제품 폐기처리  
지침』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최종안]

2021. 10.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목 차 ]

0. 요약문	
1. 규제 개요 .....	1
2. 주요 규제내용 .....	2
3. 관련 인증정보 .....	5
붙임 1. 규제원문.....	6
붙임 2. 對 발행국 수출액 규모( '20).....	13

본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 보고서에 관한 WTO TBT 통보문 정보와 보고서 원문은 KnowTBT 포털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등록 시 TBT 경보 서비스 수신이 가능합니다. (www.knowtbt.kr)

## 요 약 문

<b>규제명</b> (국문, 영문)	레인지 후드 등 9종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를 위한 환경관리 및 오염방지 및 관리 지침' 발표 Notice on the Reform Implementation Plan for Hazardous Waste Management Supervision and Utilization Capacity			
<b>WTO/TBT</b> 통보문 번호	미통보문	<b>통보국</b>	중국	
<b>채택(예정)일</b>	2021-09-10	<b>시행현황</b>	시행중	
<b>시행(예정)일</b>	2021-09-10	<b>통보일(고시일)</b>	2021-05-11	
<b>HS Code</b>	8414.60, 8516.10, 8419.11, 8443.31, 8528.52, 8517.12	<b>의견수렴 마감일</b>	-	
<b>총 수출액</b> (천불)	47,766,745 (2020)	<b>對발행국 수출액</b> (천불)	138,013 (2020)	
<b>중소기업</b> 품목여부	미해당			
<b>규제</b> 주요 내용	1. 규제부처 : 중국 생태환경부(MEP) 2. 규제목적 : 환경 보호 3. 주요 내용 : 중국 생태환경부(MEP)는 환경보호를 위해 9대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에 관한 처리 지침을 발표함			
<b>심층</b> <b>분석</b> <b>결과</b>	<b>기본/심화</b>	기본 ( )	심화 ( )	최종안 ( ✓ )
	<b>종합 의견</b>	동 규정은 전기전자제품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업계전파 필요		

# 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중국 생태환경부(MEP)\*는 환경보호를 위해 9대 전기전자제품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

\* MEP: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廢棄電器電子產品回收處理管理條例

- (규제요지) 전기전자 폐기물의 분해, 처리작업 지도 및 규범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

### <주요 내용>

- ① (처리기업의 기본 요구사항)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기업은 보관/처리장소, 설비, 인원 등 기본 요구사항을 갖춰야 함
- ② (오염물 배출) 오수 및 소음 배출은 중국 표준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③ (대비 매뉴얼 작성)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 기업은 돌발적인 환경사건의 응급대비책을 작성해야 함
- ④ (데이터 정보관리 및 경영활동 보고) 처리 기업은 데이터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경영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함

- (적용대상) 9대 전기전자제품

1. 주방후드
2. 전기온수기
3. 가스온수기
4. 프린터
5. 복사기
6. 팩스
7. 모니터
8. 이동통신장비
9. 전화기

- (시행일) '2021.09.08.

## 2

## 규제 상세정보

### □ 제·개정 주요 변경사항 및 내용

- (처리기업의 기본 요구사항)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기업은 보관/처리장소, 설비, 인원 등 기본 요구사항을 갖춰야 함

#### 3. 기본 요구

처리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기업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시에 다음 기본 요구를 갖춰야 한다.

##### (1) 공장구역

처리기업은 집중되고 독립적인 전체 공장구역이 있고, 해당 공장구역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거나 해당 공장구역의 5년 이상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한다. 공장구역 면적이 분해처리 생산활동과 오염방지장비 운영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규모화 기업의 생산가공구역 면적(또는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공장구역 전체 부지면적의 1/2 이상이고, 5000m<sup>2</sup> 이상이 되도록 장려한다.

##### (2)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단단한 지면이어야 하고, 용량은 원칙적으로 설계 일일처리능력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화물과 인원의 출입을 감시하기 편하도록 주변에 담장이 있거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폐액 또는 폐유 등의 액체가 고이고, 유출될 수 있는 보관장소는 누출방지 조치와 액체수집시스템을 갖춘다. 실외에 위치한 보관장소는 비를 막아주는 천막을 설치해야 한다. 9종 제품의 단독 창고구역을 갖추고, 각 유형의 9종 제품과 각 유형의 분해산물(최종 폐기물 포함)은 구역을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 단, 자동화 창고보관시스템은 예외로 한다. 각 구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지를 설치하고, 보관물 명칭을 표기한다.

##### (3) 처리장소

9종 제품을 분해, 이용, 처리하는 전문 처리장소는 단단한 지면의 실내 장소를 갖추고, 처리장소 세척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폐유 등의 액체물질의 누출방지, 흐름차단, 수집시설을 갖춘다. 처리장소는 구역별로 설치하고, 각 처리구역 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안내표지와 조작흐름도를 설치한다.

##### (4) 설비

9종 제품을 분해, 이용, 처리하는 시설설비는 국가가 제정한 관련 전자폐기물 오염방지의 관련 법률, 표준, 기술규범과 기술정책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처리기업은 9종 제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운반, 보관, 분해, 처리, 분류, 포장, 계량, 근로보호, 오염방지, 응급구조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낙후된 기술, 공정과 설비(예: 용선로, 간이 반사로 등의 설비와 간이 산세척 공정 등)를 이용하여 9종 제품을 분해, 이용,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천에 불태우거나 직접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인원**

처리기업은 최소 1명의 환경보호 전문기술인원을 보유한다. 환경보호를 책임지는 전문기술 인원은 관련 업무경험 또는 관련 업무교육 배경을 갖춰야 한다.

- **(오염물 배출) 오수 및 소음 배출은 중국 표준\*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대기오염물 종합 배출 표준 (GB 16297)

**(2) 오염물 배출**

**오수 배출**은 <오수 종합 배출 표준>(GB 8978)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폐기가스 배출**은 <대기오염물 종합 배출 표준>(GB 16297), <휘발성 유기물의 비조직적 배출 표준>(GB 37822)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연소와 열분해 등의 방식으로 전기전자 폐기물 및 그 부속품, 부품을 처리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 폐기가스 배출은 <위험폐기물 연소 오염통제 표준>(GB 18484)의 위험폐기물 연소시설 배출통제 요구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소음 배출**은 <산업기업 공장경계 환경소음 표준>(GB 12348)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처리기업은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자격 허가관리방법>(환경보호부령 제13호)의 관련 요구에 따라 연도 감시계획을 제정하고, 대기와 물에 들어가는 오염물, 공장경계 소음 및 인근 민감지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주요 오염물은 별첨2를 참고한다.

- **(대비 매뉴얼 작성)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 기업은 돌발적인 환경사건의 응급대비책을 작성해야 함**

**(4) 환경 대응**

처리기업은 <기업 사업체의 돌발적인 환경사건 응급대비책 관리방법(잠정시행)>(환경보호부 [2015]4호)을 근거로 하고, <위험폐기물 경영업체의 응급대비책 작성지침>(기존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 2007년 제48호)를 참고하여 **돌발적인 환경사건 응급대비책을 작성**한다.

- **(데이터 정보관리 및 경영활동 보고) 처리 기업은 데이터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경영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함**

(5) 데이터 정보 관리시스템

처리기업은 데이터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생태환경부의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정보 관리시스템 요구를 참고하여 설계, 운영, 협력할 수 있다. 현금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처의 요구에 따라 9종 제품 회수처리의 기본 데이터와 관련 경영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관련 인증정보**

- (인증개요) 중국은 '12년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인증절차) 중국 내 제조업체는 국가세무총국에 분기별로 기금을 납부하고, 수입업체는 화물 수입신고 시 해관총서에 수수료를 납부함  
① 신청서 제출 ②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제품 평가 실시 ③ 기금 납부
- (인증기관) 중국 해관총서\*  
\* 海關總署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 (시험기관) 해당 없음
- (구비서류) 아래 구비서류가 필요함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제품 재활용 정보 및 독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li> <li>- 적합성 선언</li> <li>- 제품 필수 이행방안 설정</li> </ul>

- (인증 시 유의사항) 수수료는 제품별로 상이함(TV 13RMB, 냉장고 12 RMB, 세탁기 7 RMB, 에어컨 7RMB 등)

본 심층분석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을 답변해드립니다.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기술규제대응센터 TEL: 02-2164-0036

**별첨**

**주방후드 등 9종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환경관리와 오염방지 지침**

**1. 근거와 목적**

<전기전자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조례>을 관철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오염을 방지하고,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목록(2014년판)>에서 **주방후드,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모니터, 이동통신장비, 전화기** 등 전기전자 폐기물(이하 9종 제품)의 분해, 처리작업을 지도, 규범화하기 위해 본 지침을 제정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9종 제품 처리기업(이하 처리기업)의 환경관리와 오염방지 업무에 적용하고, 기타 유형 제품(유사한 분해산물과 처리공정이 있는)은 본 표준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각 설구(設區-행정구역)의 시(市)급 생태환경주관부처는 9종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자격 신청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자료심사 또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본 지침을 기술적인 참고로 제공할 수 있다.

**3. 기본 요구**

처리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기업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시에 다음 기본 요구를 갖춰야 한다.

**(1) 공장구역**

처리기업은 집중되고 독립적인 전체 공장구역이 있고, 해당 공장구역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거나 해당 공장구역의 5년 이상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한다. 공장구역 면적이 분해처리 생산활동과 오염방지장비 운영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규모화 기업의 생산가공구역 면적(또는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공장구역 전체 부지면적의 1/2 이상이고, 5000m<sup>2</sup> 이상이 되도록 장려한다.

**(2)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단단한 지면이어야 하고, 용량은 원칙적으로 설계 일일처리능력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화물과 인원의 출입을 감시하기 편하도록 주변에 담장이 있거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폐액 또는 폐유 등의 액체가 고이고, 유출될 수 있는 보관장소는 누출방지 조치와 액체수집시스템을 갖춘다. 실외에 위치한 보관장소는 비를 막아주는 천막을 설치해야 한다. 9종 제품의 단독 창고구역을 갖추고, 각 유형의 9종 제품과 각 유형의 분해산물(최종 폐기물 포함)은 구역을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 단, 자동화 창고보관시스템은 예외로 한다. 각 구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지를 설치하고, 보관물 명칭을 표기한다.

**(3) 처리장소**

9종 제품을 분해, 이용, 처리하는 전문 처리장소는 단단한 지면의 실내 장소를 갖추고, 처리장소 세척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폐유 등의 액체물질의 누출방지, 흐름차단, 수집시설을 갖춘다. 처리장소는 구역별로 설치하고, 각 처리구역 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안내표지와 조작흐름도를 설치한다.

**(4) 설비**

9종 제품을 분해, 이용, 처리하는 시설설비는 국가가 제정한 관련 전자폐기물 오염방지의 관련 법률, 표준, 기술규범과 기술정책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처리기업은 9종 제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운반, 보관, 분해, 처리, 분류, 포장, 계량, 근로보호, 오염방지, 응급구조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낙후된 기술, 공정과 설비(예: 용선로, 간이 반사로 등의 설비와 간이 산세척 공정 등)를 이용하여 9종 제품을 분해, 이용,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천에 불태우거나 직접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인원**

처리기업은 최소 1명의 환경보호 전문기술인원을 보유한다. 환경보호를 책임지는 전문기술인원은 관련 업무경험 또는 관련 업무교육 배경을 갖춰야 한다.

**4. 환경관리와 오염방지 조치**

처리기업이 9종 제품을 분해, 이용, 처리하는 생산활동을 진행할 경우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의 오염통제 기술규범>(HJ 527)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분해산물 관리**

주요 분해산물의 특성 및 행방에 관한 요구는 별첨1을 참고한다.

그 중에서 위험폐기물은 <위험폐기물 보관의 오염통제표준>(GB 18597)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보관은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하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비위험폐기물에 혼입해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처리기업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분해산물(최종 폐기물 포함)에 대해 적절한 이용 또는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조직, 시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응하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업체에 이용 또는 처리를 위탁한다. (구체적인 처리 요구는 별첨1 참고) 위험폐기물 및 <바젤 협약> 관리통제에 관련된 기타 폐기물을 수출하려 할 경우 <위험폐기물 수출 심사비준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처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오염물 배출**

오수 배출은 <오수 종합 배출 표준>(GB 8978)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폐기가스 배출은 <대기오염물 종합 배출 표준>(GB 16297), <휘발성 유기물의 비조직적 배출 표준>(GB 37822)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연소와 열분해 등의 방식으로 전기전자 폐기물 및 그 부속품, 부품을 처리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 폐기가스 배출은 <위험폐기물 연소 오염통제 표준>(GB 18484)의 위험폐기물 연소시설 배출통제 요구 또는 지방 배출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소음 배출은 <산업기업 공장경계 환경소음 표준>(GB 12348)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처리기업은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자격 허가관리방법>(환경보호부령 제13호)의 관련 요구에 따라 연도 감시계획을 제정하고, 대기과 물에 들어가는 오염물, 공장경계 소음 및 인근 민감지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주요 오염물은 별첨2를 참고한다.

**(3) 설비 운영**

자동화 설비로 9종 제품을 분쇄, 선별 처리할 경우 각종 금속, 유리 및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핵심부품을 분리하거나 핵심부품의 유해물질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을 경우 별첨3의 구체적인 공정설비 요구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채택하는 기술노선에 따라 상응하는 폐기가스, 폐수, 슬러지 등의 수집, 처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작업 방식으로 9종 제품 본체 또는 부품을 분해, 처리할 경우 폐기가스 수집시설 또는 설비(예: 음압 작업대)를 갖추고, 분진 또는 기타 폐기가스를 수집해야 한다.

분해과정에서 어떤 부품이 수작업 또는 기계처리공정 중에 환경 또는 건강안전에 위험이 될 경우 수작업 또는 기계처리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부품을 제거한다.

처리설비와 기술에 관련된 오염방지 요구는 별첨3을 참고한다.

**(4) 환경 대응**

처리기업은 <기업 사업체의 돌발적인 환경사건 응급대비책 관리방법(잠정시행)>(환경보호부 [2015]4호)을 근거로 하고, <위험폐기물 경영업체의 응급대비책 작성지침>(기존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 2007년 제48호)를 참고하여 돌발적인 환경사건 응급대비책을 작성한다.

**(5) 데이터 정보 관리시스템**

처리기업은 데이터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생태환경부의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정보 관리시스템 요구를 참고하여 설계, 운영, 협력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처의 요구에 따라 9종 제품 회수처리의 기본 데이터와 관련 경영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표준	산물명칭	출처	환경 특성	산물 행방
1	납유리	컬러 CRT 유형 유리 CRT의 neck) 관유리	위험폐기물 에 속하며 HW49에 따라 관리	해당 유형 위험폐기물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에 맡겨서 처리

2	인쇄회로기판	모 9 제품 드 중	위 험 폐 기 물 에 속 하 며 따 라 관 리	해 당 유 형 위 험 폐 기 물 허 가 증 을 보 유 한 업 체 에 맡 겨 서 처 리
3	형광물질분말	CRT	위 험 폐 기 물 에 속 하 며 따 라 관 리	해 당 유 형 위 험 폐 기 물 허 가 증 을 보 유 한 업 체 에 맡 겨 서 처 리
4	수은발광관	액 모 니 터 사 기 정 터 기 복 사 기 팩 스	위 험 폐 기 물 에 속 하 며 따 라 관 리	해 당 유 형 위 험 폐 기 물 허 가 증 을 보 유 한 업 체 에 맡 겨 서 처 리
5	잉크	프 린 터 사 기 복 사 기 팩 스	위 험 폐 기 물 에 속 하 며 따 라 관 리	해 당 유 형 위 험 폐 기 물 허 가 증 을 보 유 한 업 체 에 맡 겨 서 처 리
6	전선케이블	모 9 제품 드 중	폴 리 브 롬 화 비 페 닐 폴 리 브 롬 화 디 페 닐 에 테 르 를 수 포 함 하 고 있 는 경 우 위 험 이 있 을 수 있 다	해 당 분 해 처 리 능 력 을 갖 춘 전 기 전 자 폐 기 물 처 리 기 업 또 는 전 자 폐 기 물 분 해 이 용 처 리 업 체 목 록 내 의 기 업 에 게 위 탁
7	리튬배터리	이 동 통 신 장 비	환 경 위 험 이 있 음	해 당 분 해 처 리 능 력 을 갖 춘 전 기 전 자 폐 기 물 처 리 기 업 또 는 전 자 폐 기 물 분 해 이 용 처 리 업 체 목 록 내 의 기 업 또 는 회 수 처 리 능 력 을 갖 춘 합 법 적 인 준 법 기 업 에 게 위 탁
8	전원케이스, CD롬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폐기물류 분해부품	프 린 터 사 기 복 사 기	인 쇄 회 로 기 판 의 위 험 폐 기 물 이 포 함 되 고 있 는 경 우 위 험 이 있 을 수 있 다	해 당 분 해 처 리 능 력 을 갖 춘 전 기 전 자 폐 기 물 처 리 기 업 또 는 전 자 폐 기 물 분 해 이 용 처 리 업 체 목 록 내 의 기 업 또 는 해 당 유 형 위 험 폐 기 물 허 가 증 을 보 유 한 업 체 에 게 위 탁 하 여 처 리

**별첨 1 주요 분해산물의 특성과 행방 요구**

주: 설계 특징으로 인해 표에서 일부 분해산물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실제 분해산물에 따라 대조하여 시행한다.

번호	처리방식	주요 오염물	매개물
1	음극선관(CRT) 건식 처리	납 및 그 화합물, 입자물	대기
2	음극선관(CRT) 습식 처리	총 납, 총 니켈, 총 카드뮴	물
3	액정화면 수은등관, 수은 스위치의 분해	수은 및 그 화합물	대기

4	폐액정 열분해)	열처리(연소 또는	입자물, 벤젠계열물질, 페놀류	대기
5	인쇄회로기판 건식 처리		다이옥신,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벤젠계열물질, 페놀류, 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대기
6	인쇄회로기판 습식 처리		pH, 총 구리, 총 납, 총 비소, 총 크롬, 육가크롬, 총 베릴륨, 총 카드뮴	물
7	인쇄회로기판 기계방법 처리		분진, 휘발성 유기물, 주석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대기
8	인쇄회로기판 처리로 발생하는 비철금속재열처리		다이옥신, 안티몬 및 그 화합물, 벤젠계열물질, 페놀류, 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대기
9	전선케이블 처리		다이옥신, 납 및 그 화합물, 벤젠계열물질, 페놀류, 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대기
10	니켈카드뮴 배터리 처리		입자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화합물	대기
11	알칼리 건전지 처리		입자물, 아연, pH	대기, 물
12	리튬 배터리 처리		pH, 총 니켈, 총 구리, 총 망간, 휘발성 유기물, 음극재	대기, 물
13	토너 카트리지의 건식 처리		입자물	대기
14	우레탄 폼 플라스틱의 처리		분진	대기

### 별첨 2 9종 제품 처리의 주요 오염물

- 주: 1. 벤젠계 물질은 주로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포함한다.  
 2. 폐수 배출제거는 상기 특정 오염물을 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유물(SS),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암모니아질소 등을 감시해야 한다.  
 3. 표에 나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처리제품 유형, 생산공정 및 오염물 특징 상황에 따라 감시해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 오염물 배출(통제) 표준에 규정되지 않거나 감시 표준방법이 없는 오염물 항목은 현재 감시하지 않는다.

제품 종류	핵심부품	구체적인 설비 요구(포함하지만 국한되지 않음)	비고
주방후드	기름때부품(모터 외)를 포함하며, 예들 들어, 커버, 임펠러, 후드배관(나선형 케이스) 등	1) 기름때 수집, 세척처리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춘다.	분해라인을 단독으로 설치해야 한다.
		2) 기름때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 또는 설비(예: 기름차단장치, 폐유수집설비)를 갖춘다.	
		3) 기름때/오수 처리시설 또는 설비를 갖춘다.	
가스온수기/전기온수기	내부용기	1) 물저장식 전기온수기 내부용기 파손형 설비	분해라인을 단독으로 설치해야 하며, 가스온수기와 전기온수기는 분해라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모니터 (CRT)	음극선관(CRT)	1) 원추형 유리 분리 또는 납유리 분리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다. (예: CRT 절단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자격을 이미 취득한 기업이 모니터 분해 시에 기존 CRT/액정 TV 분해라인을 사용할 경우, 1분기 전에 설구(設區, 행정구역)의 시·군·구청장에게 환경주관부처에 보고한다. 각 분해라인은 동일 분기 내에 모니터와 CRT/액정 TV 분해라인을 동시에 진행해선 안 된다.
	형광물질분말	3) 형광물질분말 수집장치(예: 분진 추출장치)를 갖춘다.	
모니터(액정 화면 포함)	형광등관	1) 수은등관의 분해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다. 예를 들어 하단 또는 측면 통풍시스템이 있으며, 수은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음압 작업대와 수은등관 전용 보관용기가 있다.	
	액정화면	2) 액정 분리, 회수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다. 예를 들어 폐수 재활용의 초음파 세척장비가 있다. 3) 패널 유리와 편광판 분리 설비 또는 장비를 갖춘다. 예를 들어 열충격 설비 또는 장치로 패널유리와 편광판을 분리한다.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정전기 영상 카트리지, 카트리지(토너 카트리지 포함), 정찰 페토너 부품 등 포함되거나 부품	1) 토너와 부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분진 누출 방지와 분진 농도 자동경고 등의 기능이 있는 분해설비를 갖추고, 분진 농도 감시장치를 갖춘다.	분해라인을 단독으로 설치해야 하며, 건식 처리를 할 경우 1), 2), 3)을 충족시켜야 한다. 습식 처리를 할 경우 4)를 충족시켜야 한다. 프린터, 복사기, 팩스는 분해라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토너를 제거, 수집할 수 있고, 정전기 방지 등의 방폭조치를 취한 토너 카트리지(토너 카트리지, 페토너 카트리지 포함) 처리설비를 갖춘다.	
		3) 배기시스템, 폐기가스 정화장치가 있는 음압 작업대와 작업구역을 갖춘다.	
		4) 습식 처리를 할 경우 토너를 제거하고, 폐수 수집처리장치를 갖춰야 한다.	
	충전 롤러, 전사 롤러, 상하 롤러 등의 부품	5) 금속 축과 플라스틱 고무 코팅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폐고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는 분리처리설비를 갖춘다.	
형광등관	6) 수은등관의 분해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다. 예를 들어 하단 배기시스템, 누출방지, 수은 폐기가스 정화장치의 음압 작업대와 수은등관 전용 보관용기가 있다.		
프린터 W 복사기 W 팩스	액정화면	7) 액정분리, 회수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다. 예를 들어 폐수 재활용의 초음파 세척장비가 있다.	분해라인을 단독으로 설치해야 하며, 건식 처리를 할 경우 1), 2), 3)을 충족시켜야 한다. 습식 처리를 할 경우 4)를 충족시켜야 한다. 프린터, 복사기, 팩스는 분해라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8) 패널 유리와 편광판 분리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다. 예를 들어 열충격 설비 또는 장치로 패널 유리와 편광판을 분리한다.	

별첨 3 처리설비와 기술의 오염방지 요구

제품 종류	핵심부품	구체적인 설비 요구(포함하지만 국한되지 않음)	비고

	<p>잉크 카트리지</p>	<p>9) 잉크 수집장치를 갖춘다.</p>	
<p>이동통신장비/전화기</p>	<p>하드 디스크, CD, DV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p>	<p>10) 추가적으로 분해, 처리하고, 금속, 플라스틱으로 분류,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다.</p>	
	<p>금속 부품, 액정화면 등</p>	<p>1) 금속, 부속품과 액정화면 등의 부품을 분해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2) 액정분리, 회수설비 또는 장치에 대해 폐수 재활용의 초음파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3) 패널 유리, 편광판 분리설비 또는 장치에 대해 열충격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추어서 패널 유리와 편광판을 분리시켜야 한다.</p>	<p>분해라인을 단독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동통신장비와 전화기는 분해라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9종 제품</p>	<p>배터리</p>	<p>4) 플라스틱, 금속 구리,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또는 그 화합물을 회수하는 장치를 갖춘다.</p> <p>5) 배터리 방전장치를 갖춘다.</p> <p>6) 배기시스템, 폐기가스 정화장치를 갖추고, 파쇄, 건조시스템이 밀폐되며, 분진, HF와 VOCs 등 유해가스의 폐기가스 수집처리 시스템을 갖춘다.</p>	
	<p>인쇄회로기판</p>	<p>각기 다른 기술로 인쇄회로기판을 처리할 경우 공정에 맞고 관련 오염통제 요구에 부합하는 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p> <p>1) 물리적 분쇄 선별방법으로 금속과 비금속재료를 분리할 경우 분쇄는 소음감소 조치를 취한 밀폐시설에서 진행하고, 분진 및 유해가스 수집처리시스템을 설치하며, 부속품 분해 및 인쇄회로기판 자동화 투입, 분쇄, 선별을 통해 구리 등의 금속을 회수하는 기계처리장치를 갖추도록 장려한다.</p> <p>2) 가열 등의 방식으로 인쇄회로기판의 부속품, 부품, 수은 스위치 등을 분해할 경우 음압 작업대를 사용하고, 납 연기(분진),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폐기가스 수집처리시스템을 설치한다.</p> <p>3) 화학적인 방법으로 금속을 추출할 경우 처리시설은 폐기가스 처리시스템, 폐액 회수장치와 오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동화 정도가 높고, 밀폐성이 양호하며, 화학약품 외부유출방지 조치를 취한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화학약품 및 기타 강한 부식성 액체를 저장하는 설비, 저장탱크는 필요한 넘침 방지, 누출방지, 사고경고장치, 비상사고 저장수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화학약품 넘침 방지, 누출방지 조치를 취하며, 예를 들어 담장을 설치하거나 하부에 누출방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p> <p>환경 조치가 없는 간이 산세척 공정으로 금, 은, 팔라듐 등의 귀금속 추출해선 안 되며, 폐산성액과 슬러지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p> <p>4) 건식으로 회로판을 처리해서 금속을 추출할 경우 환경보호 요구에 맞는 유해가스 등의 처리장치를 갖춘다.</p> <p>5) 열분해법 공정을 채택할 경우 처리설비에 폐기가스 처리시스템을 설치한다.</p>	

제품 종류	핵심부품	구체적인 설비 요구(포함하지만 국한되지 않음)	비고
9 종 제품	플라스틱	<p>1) 분해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에 대해 파쇄, 조립(造粒)을 진행하고, 플라스틱 입자 제품을 생산할 경우 조립기(造粒機) 등에 해당 플라스틱 가공설비를 갖추고, 폐기가스 정화처리장치를 갖춘다.</p> <p>2) 분해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에 대해 나무조각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세공을 할 경우 그에 맞는 제품 생산설비와 오염방지 조치를 갖춘다.</p>	



**붙임 2**

**對발행국 수출품목 및 수출액**

No	HS CODE	제품명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2020)	총 수출액 (천불) (2020)
1	8414.60	8414.6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15	11,456
2	8516.10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1,617	28,583
3	8419.11	8419.11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194	222,417
4	8443.31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32,473	195,147
5	8528.52	8528.52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8,760	210,518
6	8517.1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94,654	4,098,624
합계			138,013	4,766,745